■ (해양경찰청)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83호서식]

긴급응급조치 결정서

제 호

다음 행위자에 대하여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합니다.

[□]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
[□]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
- 긴급응급조치의 보호 대상: [] 상대방 [] 상대방의 동거인 [] 상대방의 가족

행위자	성 명	()	주민등록번호	(세)
	직 업			
	주 거			
	변 호 인			
상대방등	성 명			
	주 소			
	직장(소재지)			
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일시 및 장소				
긴급응급조치 결정 근거		□ 사법경찰관 직권 □ 상대방 □ 상대방의 법정대리인 □ 신고자		
긴급응급조치 기간 및 장소		기간 :		
		접근금지 장소 :		
스토킹행위의 요지 및 긴급응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				

사법경찰관